

학교법인 동서학원

2021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이사	8 인	2 인
참석이사	8 인	1 인

1. 일 시 : 2021년 6월 29일(화), 오후 2:00~3:30, (회의소집 통보일: 2021년 6월 21일)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가. 참석임원

- 이사(8명) : 박동순, 임효진, 장제국, 추만석, 양상백, 이순걸, 오병태, 강정호

- 감사(1명) : 양한석

나. 결석임원

- 이사(0명) :

- 감사(1명) : 문승엽

4. 회의안건

(1)심의 안건 :

1)법인정관 변경(안) 심의

2)동서대학교 2021-2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 건

3)경남정보대학교 2021-2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 건

4)동서대학교 학과 신설(안) 심의 건

5)경남정보대학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심의 건

(2)보고 사항 :

5. 회의내용 :

(1) 이사장은 법인 서이남 행정실장에게 성원보고를 요청하다.

(2) 행정실장은 재적이사 8명중 8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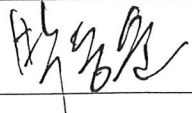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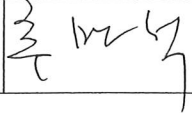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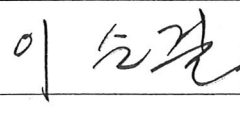
(3) 이사장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학년도 제3차 법인이사회 개회를 선언한 후 전차 회의록 보고를 행정실장에게 요청하자, 보고하고 이의 없음을 접수하다.

(4) 이사장은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토의 및 결의에 들어간다.

6. 토의 및 결의: 법인 정관변경(안) 심의 건

(1)이사장은 오늘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행정실장에게 자세한 설명과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2)행정실장은 법인정관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의 기간)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 개정과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동법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징계등 의결의 기한)의 변경사항, 정관에 표기된 법령용어 정비 및 대학에서 요청한 하부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한 법인정관 변경(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3)강정오이사가 정관의 변경내용을 검토한 후,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를 하자, 양상백이사가 재청하니, 오병태 이사가 삼청하고 나머지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이 되다.

(4)이사장은 이사들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법인정관 변경(안)이 붙임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5)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정하자고 하자, 임효진이사가 이사장, 추만석, 이순걸이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

7. 폐회 :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 양상백이사의 동의로 오후 3시 30분에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21. 6. 29.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

이 사 장 박 동 순	이 사 장 제 국
이 사 임 효 진	이 사 추 만 석
이 사 양 상 백	이 사 이 순 걸
이 사 오 병 태	이 사 강 정 호
감 사 양 한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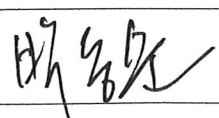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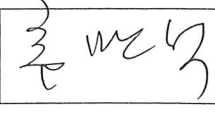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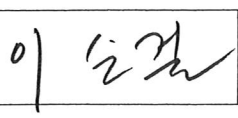
학교법인 동서학원 정관 개정(안)

1) 정관 개정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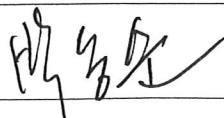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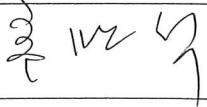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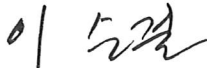
-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 사항 반영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전문개정(2020.12.22.)에 따라 정관 제39조 지구수정
 -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전문개정(2020.12.22.)에 따라 정관 제56조의2 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의 기간) 제1항에 따라 휴직 기간 개정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징계등 의결의 기한) 1항 사항 반영
- 법령용어 정비(내지→부터, 3월→3개월로 변경 등)
- 대학의 하부조직 변경에 따른 반영

2)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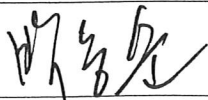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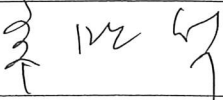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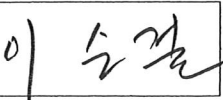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34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34조(임용) ① ----- ----- -----.	항위치변경 (2항→8항) 지구수정
②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명하되 정년보장 교원 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대학에 두며 심사위원회 규정 은 따로 정한다. 그러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은 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명하되 정년보장 교원 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대학에 두며 심사위원회 규정 은 따로 정한다. 그러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항위치변경 (3항→2항)
1. 근무기간 가.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 교 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정년까지의 기간 다. 조 교 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전임강사<삭제>('12.7.20)	1. ----- 가. ----- ----- 나. ----- 다. ----- 라. -----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현행	개정(안)	비고
2. 급여. 정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조교는 해당 부서장의 제청으로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하며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교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 하여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정 을 적용할 수 있다. 1. 근무기간 가.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나. 부 교 수 : 6년 또는 정년까지의 기간 다. 조 교 수 : 4년 또는 6년('12.7.20) 라. 전임강사 : 2년<삭제>('12.7.20) 2. 재임용심사 재임용심사에 관한 사항 3. 교원업적평가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⑥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겸임· 초빙교원 등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하며, 강사의 임용 과 신분보장, 징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 한다. ⑦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 아 이사장이 보한다. ⑧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 ----- 3. ----- ----- 4. ----- ----- 5. ----- ----- 6. ----- ④ -----임용한다. ⑤ ----- ----- ----- ----- ----- 1. 근무기간 가. ----- 나. ----- 다. ----- 2. ----- ----- 3. ----- ----- ⑥ 제1항부터 제3항 ----- ----- ----- ----- ⑦ ----- -----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 -----	지구수정 지구수정 지구수정
제35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5조(휴직의 사유) -----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지구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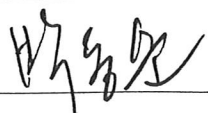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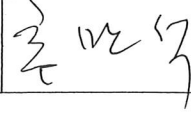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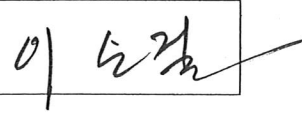
간서명 대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현행	개정(안)	비고
제36조(휴직의 기간) 1. 제35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u>이내</u> 로 한다.	제36조(휴직의 기간) 1. ----- <u>이내</u> 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구수정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반영)
제38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교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교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35조 제7호 내지 제7의 2호의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1조의 3에 따른다	제38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 ----- ----- 1. ----- 2. ----- ----- ② ----- ----- ③ 제35조 제7호부터 제7의 2호까지의 ----- -----.	자구수정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2관 신분보장 제39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u>형사사건으로</u>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2관 신분보장 제39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 -----3개월이 -----50퍼센트를 -----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 --3개월----- ⑤ 제4항의 ----- ----- -----	자구수정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반영) 자구수정 항변호변경 자구수정 항변호변경 (공무원보수 제29조 반영) 자구수정 자구수정 항변호변경

간서명 대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현행	개정(안)	비고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장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 ⑦ 제4항의 -----.	자구수정 항번호변경 자구수정 항번호변경
제44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제44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9인 이내.	자구수정
제52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징계의결의 기한) ----- 60일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	자구수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 반영)
제5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5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자구수정 (시립학교법 제66조의4 개정 반영)
제2절 대 학교 제68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무처, 교육혁신본부, 기획연구처, 학생·취업지원처, 입학처, 국제처, 사무처를 두며, 총장 및 부총장 직속으로 교목실, 총장실, 재무본부, 미래캠퍼전략본부, 종합홍보실, 창업지원단, 법무감사실, 중국사업본부, 건설본부를 둔다. ② 제1항의 직제에 따른 차장, 본부장, 실장, 단장의 자격요건은 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③ 각 부서에는 필요에 따라 세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 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④ 각 부서에는 업무분장에 따라 팀제와 담당역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 학교 제68조(하부조직) ① -----. ② -----. ③ -----. ④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	자구수정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4절 전 문 대 학 제76조(하부조직) ① 전문대학에 교목실, 기획처, 대학혁신본부, 교무처, 학생처, 취업진로처, 입시관리처, 대외협력처, 사무처, <u>재무본부, KIT사랑의봉사센터</u>를 둔다 ② 제1항의 직제에 따른 실장, 처장, <u>본부장 센터장</u>의 자격요건은 전문대학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③ 각 부서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사무) 부참사 이상으로 부처장, 실장 및 센터장을 보할 수 있다. ④ 각 부서에는 업무분장에 따라 팀제와 담당역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 및 <u>제5항</u>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전 문 대 학 제76조(하부조직) ① ----- ----- ----- <u>재무본부를 둔다.</u> ② ----- <u>본부장의</u> ----- ----- ③ ----- ----- ④ ----- ----- ⑤ ----- <u>제4항의</u> ----- -----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86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u>제3호 내지 제4호</u>의 경우 자문에 한다. 1. 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6조(평의원회의 기능) ----- ----- <u>제3호부터 제5호까지</u> ----- ----- 1. ----- 2. ----- 3. ----- 4. ----- 5. ----- 6. ----- 7. ----- -----	자구수정 (사립학교법 제31조 반영)
<신 설>	<u>부칙</u>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학교법인 동서학원

2021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이사	8 인	2 인
참석이사	8 인	1 인

1. 일 시 : 2021년 6월 29일(화), 오후 2:00~3:30, (회의소집 통보일: 2021년 6월 21일)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가. 참석임원

- 이사(8명) : 박동순, 임효진, 장제국, 추만석, 양상백, 이순걸, 오병태, 강정호
- 감사(1명) : 양한석

나. 결석임원

- 이사(0명) :
- 감사(1명) : 문승엽

4. 회의안건

(1)심의 안건 :

- 1)법인정관 변경(안) 심의
- 2)동서대학교 2021-2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 건
- 3)경남정보대학교 2021-2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 건
- 4)동서대학교 학과 신설(안) 심의 건
- 5)경남정보대학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심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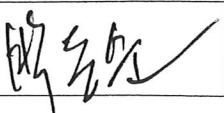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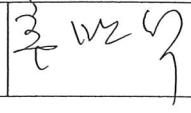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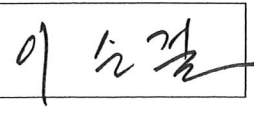
(2)보고 사항 :

5. 회의내용 :

- (1)이사장의 사회로 참석인원을 점검한 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다.
- (2)이사장은 이번 심의 안건은 동서대학교 2021-2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 건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한 후 토의 및 결의에 들어간다.

6. 토의 및 결의: 동서대학교 2021-2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 건

- (1)이사장은 오늘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행정실장에게 자세한 설명할 것을 지시하고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2)행정실장은 이번 안건은 동서대학교에서 제청한 2021-2학기 9월 1일부 및 10월 1일부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과 8월 31일부 전임교원 재계약 탈락 심의건으로 재임용(재계약) 대상자 총 38명 중 기준을 충족한 37명에 대한 재임용(재계약) 제청과 양적평가를 미충족한 엘레나 교수 1명에 대한 재계약 탈락 제청에 관한 내용이라 말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다.
- (3)강정호이사가 동서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대상자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 질의하여 행정실장으로부터 상세 설명을 들은 후, 본 심의건은 동서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충분히 검토 및 평가되어 재임용(재계약) 대상자 중 37명은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1명은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동서대학교에서 제청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전에 대하여 동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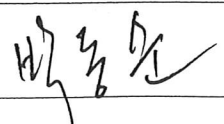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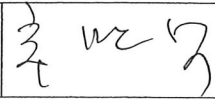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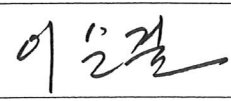
(4)오병태이사가 강정호이사의 동의에 재청한다고 하니, 임효진이사가 삼청하고 나머지 참석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

(5)이사장은 이사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동서대학교 2021-2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결 의 사 항 -----

■ 재임용(재계약)

순번	소 속	직 급	성 명	임용기간
1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부교수	고 * *	2021.09.01. ~ 2027.08.31.
2	바이오헬스융합대학	부교수	장 * *	2021.09.01. ~ 2027.08.31.
3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영어학과	조교수	* *	2021.09.01. ~ 2022.08.31.
4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영어학과	조교수	* *	2021.09.01. ~ 2023.02.28.
5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영어학과	조교수	* *	2021.09.01. ~ 2023.02.28.
6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영어학과	조교수	* *	2021.09.01. ~ 2023.02.28.
7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중국어학과	조교수	* *	2021.09.01. ~ 2022.08.31.
8	International College	조교수	조 * *	2021.09.01. ~ 2025.08.31.
9	International College	조교수	여 * *	2021.09.01. ~ 2023.02.28.
10	International College	조교수	* *	2021.09.01. ~ 2023.02.28.
11	International College	조교수	* *	2021.09.01. ~ 2023.02.28.
12	건축토목계열 건축학과	조교수	* *	2021.09.01. ~ 2023.02.28.
13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조교수	박 * *	2021.09.01. ~ 2025.08.31.
14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조교수	정 * *	2021.09.01. ~ 2022.08.31.
15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부교수	최 * *	2021.09.01. ~ 2027.08.31.
16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부교수	최 * *	2021.09.01. ~ 2023.08.31.
17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조교수	김 * *	2021.09.01. ~ 2022.08.31.
18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조교수	김 * *	2021.09.01. ~ 2022.08.31.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순번	소 속	직 급	성 명	임용기간
19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조교수	박 * *	2021.09.01. ~ 2022.08.31.
20	메카트로닉스융합계열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조교수	* *	2021.09.01. ~ 2023.02.28.
21	바이오헬스융합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박 * *	2021.09.01. ~ 2027.08.31.
22	바이오헬스융합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조 * *	2021.09.01. ~ 2025.08.31.
23	바이오헬스융합대학 바이오제약공학과	조교수	김 * *	2021.09.01. ~ 2025.08.31.
24	바이오헬스융합대학	조교수	* *	2021.09.01. ~ 2023.02.28.
25	바이오헬스융합대학	조교수	* *	2021.09.01. ~ 2023.02.28.
26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영화과	조교수	송 * *	2021.09.01. ~ 2023.08.31.
27	임권택영화예술대학 뮤지컬과	조교수	원 * *	2021.09.01. ~ 2023.08.31.
28	관광계열 호텔경영학전공	조교수	문 * *	2021.09.01. ~ 2023.08.31.
29	미래커리어대학 사회안전학부	조교수	김 * *	2021.09.01. ~ 2022.08.31.
30	미래커리어대학 시니어운동처방학과	조교수	안 * *	2021.09.01. ~ 2022.08.31.
31	미래커리어대학 실버컨설팅학과	조교수	이 * *	2021.09.01. ~ 2022.08.31.
32	미래커리어대학 실버컨설팅학과	조교수	최 * *	2021.09.01. ~ 2022.08.31.
33	민석교양대학	조교수	강 * *	2021.09.01. ~ 2025.08.31.
34	민석교양대학	조교수	김 * *	2021.09.01. ~ 2022.08.31.
35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부교수	김 * *	2021.09.01. ~ 2025.08.31.
36	선교복지대학원 기독교상담심리학과	조교수	최 * *	2021.09.01. ~ 2022.08.31.
37	바이오헬스융합대학 보건행정학과	조교수	박 * *	2021.10.01. ~ 2023.08.31.

■ 재계약 탈락

순번	소 속	직 급	성 명	재계약 탈락일자
1	International College	조교수	* *	2021.08.31.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 동 현	이사	홍 만 석	이사	이 승 권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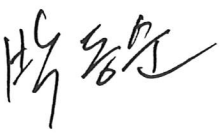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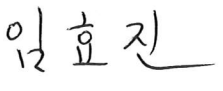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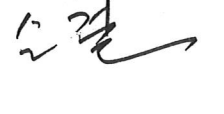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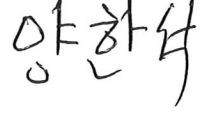
(6)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정하자고 하자, 임효진이사가 이사장, 추만석, 이순걸이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

7. 폐회 :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 양상백이사의 동의로 오후 3시 30분에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21. 6. 29.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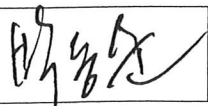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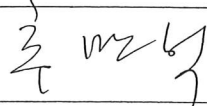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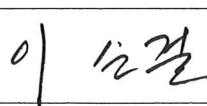
이 사 장	박 동 순		이 사 장	제 국	
이 사	임 효 진		이 사	추 만 석	
이 사	양 상 백		이 사	이 순 걸	
이 사	오 병 태		이 사	강 정 호	
감 사	양 한 석				

학교법인 동서학원

2021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이사	8 인	2 인
참석이사	8 인	1 인

1. 일 시 : 2021년 6월 29일(화), 오후 2:00~3:30, (회의소집 통보일: 2021년 6월 21일)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 가. 참석임원
 - 이사(8명) : 박동순, 임효진, 장제국, 추만석, 양상백, 이순걸, 오병태, 강정호
 - 감사(1명) : 양한석
 - 나. 결석임원
 - 이사(0명) :
 - 감사(1명) : 문승엽
4. 회의안건
 - (1)심의 안건 :
 - 1)법인정관 변경(안) 심의
 - 2)동서대학교 2021-2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 건
 - 3)경남정보대학교 2021-2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 건**
 - 4)동서대학교 학과 신설(안) 심의 건
 - 5)경남정보대학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심의 건
 - (2)보고 사항 :
5. 회의내용 :
 - (1)이사장의 사회로 참석인원을 점검한 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다.
 - (2)이사장은 이번 심의 건은 경남정보대학교 2021-2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건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한 후 토의 및 결의에 들어간다.
6. 토의 및 결의: **경남정보대학교 2021-2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 건**
 - (1)이사장은 오늘 회의 심의 건에 대하여 행정실장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것을 지시하고 이사들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2)행정실장은 이번 안건은 경남정보대학교 2021-2학기 9월 1일부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건으로 재임용(재계약) 대상자 18명 전원에 대하여 재임용(재계약) 제청이 있었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
 - (3)오병태이사가 자료검토 후, 경남정보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남정보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원종합업적평가 등 사정기준에 의해 충분히 검토, 평가되어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심의건 가결에 동의하다.
 - (4)양상백이사가 오병태이사의 동의에 재청한다고 하니, 강정호이사가 삼청하고 나머지 참석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5)이사장은 이사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경남정보대학교 2021-2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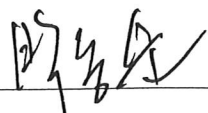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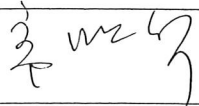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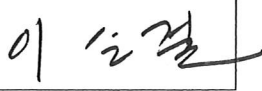
----- 결 의 사 항 -----

■ 재임용(재계약)

순번	소 속	직 급	성 명	임용기간
1	미용계열 피부·메이크업·네일전공	부교수	김 * *	2021.09.01 ~ 2027.08.31
2	인테리어디자인과	부교수	오 * *	2021.09.01 ~ 2027.08.31
3	미용계열 피부·메이크업·네일전공	부교수	정 * *	2021.09.01 ~ 2027.08.31
4	경영계열	부교수	조 * *	2021.09.01 ~ 2027.08.31
5	경찰경호행정과	부교수	김 * *	2021.09.01 ~ 2027.08.31
6	비즈니스외국어계열 영어전공	부교수	이 * *	2021.09.01 ~ 2027.08.31
7	기계계열	부교수	심 * *	2021.09.01 ~ 2027.08.31
8	항공관광과	조교수	한 * *	2021.09.01 ~ 2025.08.31
9	산업디자인계열	조교수	최 * *	2021.09.01 ~ 2025.08.31
10	치위생과	조교수	문 * *	2021.09.01 ~ 2025.08.31
11	간호학과	조교수	박 * *	2021.09.01 ~ 2023.08.31
12	간호학과	조교수	최 * *	2021.09.01 ~ 2023.08.31
13	화학공학과	조교수	이 * *	2021.09.01 ~ 2023.08.31
14	유아교육과	조교수	양 * *	2021.09.01 ~ 2023.08.31
15	의무행정과	조교수	조 * *	2021.09.01 ~ 2022.08.31
16	미용계열 피부·메이크업·네일전공	조교수	앤 * *	2021.09.01 ~ 2022.08.31
17	의무행정과	조교수	* *	2021.09.01 ~ 2022.08.31
18	치위생과	조교수	마 * *	2021.09.01 ~ 2022.08.31

(6)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정하자고 하자, 임효진이사가 이사장, 추만석, 이순걸이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

7. 폐회 :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 양상백이사의 동의로 오후 3시 30분에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함.

2021. 6. 29.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

이 사 장 박 동 순 박동순

이 사 장 제 국 장재국

이 사 임 효 진 임효진

이 사 추 만 석 추만석

이 사 양 상 백 양상백

이 사 이 순 결 이순결

이 사 오 병 태 오병태

이 사 강 정 호 강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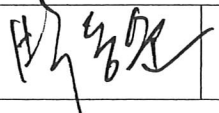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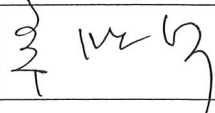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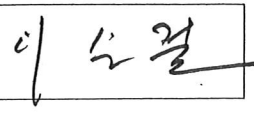
감 사 양 한 석 양한석

학교법인 동서학원

2021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이사	8 인	2 인
참석이사	8 인	1 인

1. 일 시 : 2021년 6월 29일(화), 오후 2:00~3:30, (회의소집 통보일: 2021년 6월 21일)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 가. 참석임원
 - 이사(8명) : 박동순, 임효진, 장제국, 추만석, 양상백, 이순걸, 오병태, 강정호
 - 감사(1명) : 양한석
 - 나. 결석임원
 - 이사(0명) :
 - 감사(1명) : 문승엽
4. 회의안건
 - (1)심의 안건 :
 - 1)법인정관 변경(안) 심의
 - 2)동서대학교 2021-2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 건
 - 3)경남정보대학교 2021-2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 건
 - 4)동서대학교 학과 신설(안) 심의 건
 - 5)경남정보대학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심의 건
 - (2)보고 사항 :
5. 회의내용 :
 - (1)이사장의 사회로 참석인원을 점검한 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다.
 - (2)이사장은 회의 안건이 동서대학교 학과 신설(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토의 및 결의에 들어간다.
6. 토의 및 결의: 동서대학교 학과 신설(안) 심의 건
 - (1)이사장은 오늘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행정실장에게 자세한 설명과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2)행정실장은 동서대학교에서 요청한 안건은 사회 전반에 걸친 4차 산업개발과 인공지능개발 등 차세대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학과명 변경, 학과통합, 그리고 새로운 학과로 웹툰학과, 스포츠레저산업학과, 실용콘텐츠학과를 신설하고 2022학년도 입학정원을 213명 감축하는 세부계획(안)을 자료를 참조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 (3)장제국이사가 대학이 신입생 모집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학과를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해야만 하는 현실이라 말하고 본 안건에 대해 상세히 부연 설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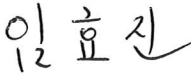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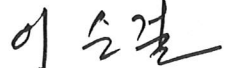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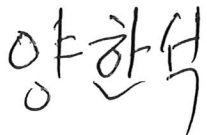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 (4)임효진이사가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를 하니 오병태이사가 재청하고, 추만석이사가 삼청 하니, 참석한 나머지 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동서대학교 학과 신설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다.
- (5)이사장은 이사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동서대학교에서 학과신설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하다.
- (5)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정하자고 하자, 임효진이사가 이사장, 추만석, 이순걸이 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
7. 폐회 :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 양상백이사의 동의로 오후 3시 30분에 이사장은 폐회 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21. 6. 29.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

이 사 장 박 동 순		이 사 장 제 국	
이 사 임 효 진		이 사 추 만 석	
이 사 양 상 백		이 사 이 순 걸	
이 사 오 병 태		이 사 강 정 호	
감 사 양 한 석			

학교법인 동서학원

2021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이사	8 인	2 인
참석이사	8 인	1 인

1. 일 시 : 2021년 6월 29일(화), 오후 2:00~3:30, (회의소집 통보일: 2021년 6월 21일)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가. 참석임원

- 이사(8명) : 박동순, 임효진, 장제국, 추만석, 양상백, 이순걸, 오병태, 강정호

- 감사(1명) : 양한석

나. 결석임원

- 이사(0명) :

- 감사(1명) : 문승엽

4. 회의안건

(1)심의 안건 :

1)법인정관 변경(안) 심의

2)동서대학교 2021-2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 건

3)경남정보대학교 2021-2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 건

4)동서대학교 학과 신설(안) 심의 건

5)경남정보대학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심의 건

(2)보고 사항 :

5. 회의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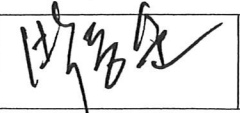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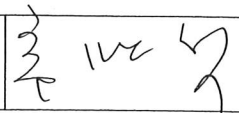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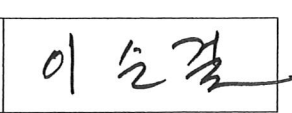
(1)이사장의 사회로 참석인원을 점검한 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다.

(2)이사장은 회의 안건이 경남정보대학교 학과 신설 및 폐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토의 및 결의에 들어가다.

6. 토의 및 결의: 경남정보대학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심의 건

(1)이사장은 오늘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행정실장에게 자세한 설명과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2)행정실장은 경남정보대학교는 최근 입시추이를 바탕으로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신설 학과는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관련 반도체과를, 반려동물 관련 직업증가와 국가자격증 전환으로 전망이 확대되고 있는 반려동물케어과를 신설하고, 이어서 폐지학과는 최근 공학계열과 인문사회계열 기피현상을 반영하여 스마트팩토리과, 비즈니스외국어계열의 영어전공과 중국어전공을 폐지하는 안을 자세히 설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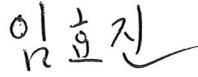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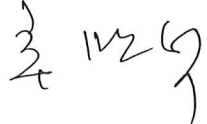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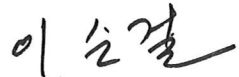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 (3)추만석이사가 지방대학이 신입생 모집에 있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차세대에 맞는 새로운 학과를 신설과 생존하기 힘든 학과를 폐지하여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본 안건에 대해 상세히 부연설명하다.
- (4)강정호이사가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를 하니 양상백이사가 재청하고, 오병태이사가 삼청하니, 참석한 나머지 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경남정보대학교의 학과 신설과 폐지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다.
- (5)이사장은 이사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경남정보대학교의 학과신설과 폐지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6)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정하자고 하자, 임효진이사가 이사장, 추만석, 이순걸이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
7. 폐회 :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 양상백이사의 동의로 오후 3시 30분에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21. 6. 29.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

이 사 장 박 동 순		이 사 장 제 국	
이 사 임 효 진		이 사 추 만 석	
이 사 양 상 백		이 사 이 순 걸	
이 사 오 병 태		이 사 강 정 호	
감 사 양 한 석	